##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8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임호선·조 국·박지원

이성윤 · 이학영 · 정준호

윤준병 • 주철현 • 이병진

박정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에 희생

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 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및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 설).
- 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결정·지급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제12조 등).
- 라.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바.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를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보상금"이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 6.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중 "명예회복을"을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명예회복에"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령사업에"를 "기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명예회복을"을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6.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 7.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6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5. 제1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6.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사항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 2.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②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의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동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3(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결정 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③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신청기간 등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4(심의·의결 등) ①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5(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4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하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제2항 중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를 "보상금등의"로 한다.
-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지연 이자) ① 제10조의3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 제11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6(결정전치주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 제11조의7(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보근리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 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의8(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의료지원금의"를 "보상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지원금을"을 "보상금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지원금의"를 "보상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지원금을"을 "보상금등을"로 한다.

제14조 중 "등을"을 "및 기념사업 등을"로, "위령사업"을 "기념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 제16조의3(인지청구의 특례) ① 노근리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경우에는 「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한다)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경우 「민

- 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6조의2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6조의4(혼인신고등의 특례) ①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한다) 이전에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한다) 이전에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855조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실종선고의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19조 중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	제1조(목적)
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u>명예를</u>	<u></u> 명예회복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써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보상금"이란 노근리사건으
	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
	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에 따
	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
	<u>다.</u>
<u> &lt;신 설&gt;</u>	6.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
	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
	<u>한다.</u>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	제3조(국가의 책무)
자 및 유족의 <u>명예회복을</u> 위하	<u>명</u> 예회복 및 보상
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	<u> 드                                   </u>
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	및	유를	주의	심ㅅ	} •	결?	정과	명
예 :	회복	에	관힌	: 시	-항	을	심의	•
의 :	결하	フ	위히	-여	국	무총	흥리	소
속.	으로	1	노근i	리사	건	희생	자심	사
및기	명 예	회년	부위원	밀회(	(0)	하-	"위	원
회'	'라	한디	<del>-</del> })를	둔대	7.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 1. 2. (생략)
- 3. 위령탑 건립 등 <u>위령사업에</u> 관한 사항
- 4.·5. (생략) <u><신 설></u>

-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u>명예</u>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⑤ (생 략) <u><신 설></u>
- ⑥ 제1항부터 <u>제5항까지에서</u>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

<u>명</u>
예회복 및 보상 등에
②
1. • 2. (현행과 같음)
3 <u>기념사업 및</u>
국제교류사업 등에
4.•5. (현행과 같음)
6.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u> 8.</u> <u>명예</u>
회복 및 보상 등을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
위원회를 둔다.
⑦제6항까지에서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을 처리한다.
  -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5. 제1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부 작성 신청접수와 조사 등 에 관한 사항
- 6.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보상금) ① 국가는 희 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 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 을 지급한다.

-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

   천만원
- 2.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②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부상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의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 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 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 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 족과 동순위로 보상금을 지급 반을 권리를 공유한다.
-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 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 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①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신 설>

수 있다.

제10조의3(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 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하여 공고할수 있다.

③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청기간 등 보상 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심의·의결 등) ① 제1 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상금 신 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

제11조(재심의) ① (생 략)

② 희생자 및 유족은 <u>제10조에</u> | ② -----<u>보상금</u>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 등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 의결을 요청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 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 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5(결정서 송달) ① 실무 위원회는 제10조의4에 따른 통 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 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

<u><신 설></u>

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1조의3(지연 이자) ① 제10조 의3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 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 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 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순 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 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 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 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u><신 설></u>

<신 설>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 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 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1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 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 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제11조의6(결정전치주의) ① 제4 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의7(다른 법률에 따른 보 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노근리사건과 관 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 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 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 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u>의료지원금</u>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시효) 이 법에 따른 보
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
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2조( <u>보상금등의</u> 환수) ①
<u></u> 보상금등을
1
<u>보상금등의</u>
2. (현행과 같음)
②
<u>보상금등을</u>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 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u>위령사</u>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u><신 설></u>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u>및</u> 기념사업 등을
기념
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

제16조의2(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16조의3(인지청구의 특례) ① 노근리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 63조 및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u><신</u> 설>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 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 월 00일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의2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16조의4(혼인신고등의 특례) ①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
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
(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
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
한다) 이전에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는 「민법」 제8

는 것으로 본다.

②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한다) 이전에 희생자의 친자로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민법」 제855조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본다.

제18조의2(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실종선고의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증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그밖의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하여 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 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의 결정. 제16조에 따른 가족관 계등록부 작성, 제16조의2에 따 른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 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이용 ·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 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 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_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사람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 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 <u>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u> 벌한다.